

신기술(특허) 사용협약서

- 신기술(특허)명 : 다점주입에 의한 부등침하구조물의 복원공법(특허 제 0368902호), 구조물 하부의 지반보강공법(특허 제0475443호)
- 발주자(갑) : 통일교육원
- 신기술(특허)개발자(을) : (주)지승구조건설 대표이사 고효석
☎ 02) 420-1088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오두산 통일전망대 엘리베이터 교체 및 환경개선과 관련된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”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신기술(특허)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(특허)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(특허) 부분만의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(특허)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기술사용료 등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(특허)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“을”은 신기술(특허)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(0%)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“건설신기술(특허) 기술사용료 적용기준”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하도급 등)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(특허)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

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,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(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.) 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낙찰자”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“을”이 “낙찰자”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“을”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(낙찰가의 84%)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“낙찰자”와 “을”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“을”은 “낙찰자”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,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.

제5조(설계변경 등)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(특허)과 관련하여 “을”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,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“갑”은 다른 신기술(특허)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을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14년 11월 24일

“갑” (발주기관명)

통일교육원 (인)

“을” (신기술(특허)개발자)

(주)지승구조건설

